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이렇게 합니다!



홈페이지 종합안내



영어(English)



베트남어(Tiếng Việt)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우즈베크어(O'zbek tili)



중국어(中文)

QR코드를 접속하면 **원산지표시 종합안내**와
언어별 번역된 리플릿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제도 문의 및 부정유통 신고 1588-8112



1

공통사항 (대상 업소 및 대상 품목 등)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등),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 (29개: 농산물 9, 수산물 20)

- 농산물 (9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배추김치(원료 중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 (20품목)**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 ※ 수산물 가공품, 조리·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진열하고 살아있는 수산물 포함

냉장고 등에 보관 중인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방법

-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과 그 가공품을 보관·진열하는 경우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고 등 보관 장소 또는 보관 용기별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 다만, **거래명세서***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관 장소 등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음
- * **거래명세서 등의 범위** : 공급(납품)자가 발행한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영수증(간이 포함), 원산지 증명서, 현재 보관 중인 식재료의 포장재 표시사항

음식점에서 꼭 보관해야 할 원산지 증명서류(축산물만 해당)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 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간이영수증 포함)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함**(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양념육, 분쇄가공육, 갈비가공품, 식육 추출 가공품만 해당))
- **대상 품목**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2

대상 품목별 원산지 표시 방법

축산물 소,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포함) 고기

- ◆ 식육·포장육·식육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 조리에는 날 것 상태로 조리하는 것을 포함하며, 판매·제공에는 배달을 통한 판매·제공도 포함
-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젓소)를 함께 표시 (다만,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종류 표시 생략 가능)

배추김치

- ◆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①배추와 ②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각각** 표시
- 배추김치 가공품, 겉절이, 보쌈김치, 백김치 등도 원산지 표시대상임(봄동, 얼갈이배추로 만든 배추김치 포함)
- (참고) 얼갈이배추가 소량 사용된 얼무김치는 배추김치로 정의할 수 없으므로 원산지 표시대상 아님
- 배추김치 이외에 사용된 고춧가루는 원산지 표시 대상 아님 ※ 수입 배추김치는 4p 참조

쌀

- ◆ **밥·죽·누룽지**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 쌀 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찰쌀, 흑미, 현미, 유색미 및 찌쌀 포함
- (참고) 떡볶이, 떡국 등에 사용된 쌀은 **원산지 표시대상 아님**



콩

-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콩국수·콩비지**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만 원산지 표시
-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되는 콩 가공품(콩 주원료) 포함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부세 등 20품목

- ◆ 수산물을 조리·판매·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
- **수산물가공품** : 조리·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포함

3

음식점에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음식점에서 식재료로 사용하는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방법

◆ 식육가공품·배추김치·쌀·콩 가공품에 사용된 주원료 중 음식점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29개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함 (29개 품목: 2p 참조)

* 주원료 : 해당 개별식품을 다른 식품과 구별, 특정 짓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1 식육가공품이란?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의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천연케이싱), 식육추출가공품, 식육합유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 만두류, 소스류, 즉석조리식품류 등에 사용된 축산물은 표시 대상 아님

2 식육가공품 사용 시

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중 **식육**의 원산지를 표시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 참고
- 수입원재품을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예시 : 소시지야채볶음(소시지 : 미국산)]

3 쌀·콩·배추김치·수산물 가공품 사용 시

주원료로서 배합비율이 높은 3순위 내의 원료*중 **쌀·콩·배추김치(배추와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표시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1호 참고
- 다만, 배추김치를 제외하고 가공품에 사용된 원재료(쌀, 콩, 수산물)가 **복합원재료인 경우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 수입원재품을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예시 : 김치찌개(배추김치 : 중국산)]

예시

- 김치만두(식품유형 : **만두류**)
- (1순위) 밀가루 30%(밀 : 미국산),
- (2순위) 배추김치 25%, [배추(국산), 고춧가루(중국산)],
- (3순위) 돼지고기 25%(국내산), 마늘 10%, 양파 5%, 고추장 5%

원산지 표시

- **식품의 유형** : 만두류(식육가공품 아님)
- **주원료** : 밀가루, 배추김치, 돼지고기
- **음식점 원산지 표시**
⇒ 김치만두[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 * 식육가공품이 아니므로 돼지고기는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님

알아두기

음식점에서 가공품(빵, 과자,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경우

- 직접조리(세트메뉴 포함)하여 판매하는 경우(음식점 표시기준 적용)
※ 조리는 단순 가열(ex 전자렌지 등), 토핑을 포함하며, 실온해동은 포함하지 않음
- 완제품 또는 완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가공품 표시기준 적용)
- 완제품을 판매할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으면 추가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됨 (단, 구매시점에 포장재의 원산지 표시를 볼 수 없는 경우 → 풋말, 안내표시판으로 게시)

4

상황별 원산지 표시 방법

모든 메뉴에 들어가는 원료의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 원산지 표시는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 대상과 함께 표시해야 하며, **일괄 표시 가능**

예시

꽃이네 메뉴판

삼겹살(돼지고기 : 국내산) 목살(돼지고기 : 칠레산)
공기밥, 누룽지 고추장찌개, 된장찌개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과 두부(콩:외국산)만을 사용합니다.

맛나 돈가스집

카레돈가스 김치돈가스(배추김치 : 중국산)
수제돈가스 공기밥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 쌀과 국내산 돼지고기만을 사용합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

◆ **섞음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 ('섞음' 표시 권장)**

국내산(국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은 경우(국내산 > 외국산)

- 불고기(쇠고기 :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 **섞음**) 또는 (쇠고기 : 국내산 한우, 호주산)
-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브라질산 **섞음**) 또는 (닭고기 : 국내산, 브라질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을 혼합 사용할 경우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해야 함. 이때 '섞음' 표시는 하지 않음**

- 쇠고기 야채죽(쇠고기 : 미국산, 쌀 : 국내산) · 햄버그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 육우, 돼지고기 : 미국산)

조리음식에 사용한 '원료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경우

◆ **음식 원료 원산지가 바뀔 때마다 해당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 해야 함**

예시

짱이네 메뉴판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브라질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짱이네 메뉴판

닭갈비(닭고기 : 국내산과 **태국산**을 섞음)
배추김치(배추 : **중국산**, 고춧가루 : **국내산**)

원산지를 '외국산'이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조리한 음식에 사용된 농산물 가공품의 원료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 '**외국산(A·B·C 국 등)**' 또는 '**외국산**'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음식점에서는 국가명을 생략하고 '**외국산**'이라고 표시 가능

예시

피자[햄(돼지고기 : **외국산**)], 된장찌개[두부(콩 : **외국산**)]

※ 다만, **가공품이 아니라면**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어도 '외국산'으로 표시 불가능하고, 해당 원산지를 표시 해야 함

5

매장에서의 표시 방법

공통사항

구분	표시 방법
표시위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대상 원료인 농산물명과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메뉴판 또는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음식점 형태별 표시 방법

음식점 형태	표시 방법
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본 업소 내의 모든 메뉴판 및 게시판 추가 취식장소가 벽, 칸막이 등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 표시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 일반 기본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팸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 교육·보육시설 등 미성년자 대상 영업 기본 월간 메뉴표, 메뉴판, 게시판, 팸말 등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추가 원산지가 적힌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이나 교육·보육시설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
	㉢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등에서 영업 기본 ① 또는 ㉠ 또는 ㉡

'원산지 표시판' 세부 제작기준

※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부착하면 게시판과 메뉴판에 원산지 표시 생략 가능

표시판 제목	'원산지 표시판'
표시판 크기	가로 x 세로(또는 세로 x 가로) 29cm x 42cm 이상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 (※ 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글자색	바탕색과 다른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부착위치	기본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의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부착 ※ 게시판 크기가 모두 같을 경우 :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게시판 1곳 게시판이 없을 때 :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글자크기 예시
60 포인트 **30** 포인트

※ 원산지 표시판 예시 참조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홈페이지)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원산지 표시 관리 ⇒ 안내 및 참고 자료(원산지표시판 작성 예시 및 양식)

6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방법

통신판매의 정의와 범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 중 같은 법에 따라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한 판매

통신판매 시 원산지 표시 방법

통신매체별 표시 방법		
구분	전자매체 이용(인터넷, 배달앱, TV등)	인쇄매체 이용(신문, 잡지 등)
표시 위치	①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 ② 허용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의 위치를 알려주는 표시를 첫 화면이나 제품명 또는 가격표시 옆·위·아래에 붙여서 표시하고 매체의 특성에 따라 자막 또는 별도의 창을 이용하여 원산지 표시 가능 <small>※ 첫화면이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그 제품이나 그 제품의 판매업체를 확인할 수 있는 최초의 화면</small>	①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표시 ② 허용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주위에 원산지 표시 위치를 명시하고 그 장소에 표시
표시 시기	대상 제품이 화면에 표시 되는 시점부터 표시	-
글자 크기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최초 등록된 가격 표시 기준)와 같거나 그보다 크게 <small>※ 별도의 창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라 표시 가능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위치·글자 크기 등을 선택하여 명확하게 제공</small>	① 원칙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 글자 크기의 1/2이상 ② 허용 광고면적 기준 8~20포인트 이상 <small>※ 농산물 포장재 원산지 표시방법 준용</small>
글자색	제품명 또는 가격 표시와 같은 색	

배달을 통해 소비자에게 음식이 전달되는 경우

표시 방법	원칙 표시 대상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 허용 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또는 영수증 등에 표시 가능 ※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경우 29개 대상 품목 원산지 표시
-------	--

원산지 표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한 처분 기준

형사처분

형사처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상습위반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
 • 원산지 거짓표시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거짓표시로 적발된 경우

과징금

과징금 위반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원 이하)의 과징금
 ※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업체 공표

농식품부, 농관원 홈페이지 등에 공표
 • 영업소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 교육 이수명령을 통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원산지 미표시 등에 대한 처분 기준

<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

구분	위반행위	1차	2차	3차	4차
과태료	쇠고기 원산지 미표시	100	200	300	300
	쇠고기 식육 종류 미표시	30	60	100	100
	돼지, 닭, 오리, 양,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미표시	품목별 30	품목별 60	품목별 100	품목별 100
	수산물 표시대상 20품목 미표시	품목별 30	품목별 60	품목별 100	품목별 100
	살아있는 수산물 미표시	5 ~ 1,000 이하			
	표시방법 위반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5~1,000 이하)			
	영수증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관련)	20	40	80	80
위반업체 공표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공표(공표 내용은 거짓표시와 동일)				
원산지 위반자 의무교육	미표시 2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교육 이수 명령 통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원산지 표시 제도 교육 이수 * 교육 미이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